

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
의 기준(제43조의4 관련)

항 목	내 용
1. 정 기 점 검 실 시	가.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 나.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 (1)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(2)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대청소한 후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할 것 (3) 피뢰장치, 소화설비 등이 「방위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할 것
2. 정기점검 결과보고	가.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. 나. 보고서에는 제조 또는 저장시설의 명칭, 소재지, 점검일시기간,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(계획) 사항을 적고, 점검을 지휘·감독한 안전책임자가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.